

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(안)

검토보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7년 11월 10일

나. 회부일자 : 1997년 11월 11일

3. 제안이유

현행 충청북도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199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

- 국가유공자·장애인·교통·주택건설 및 교육등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, 고속철도건설사업·주택조합 등 지방세법에 감면내용이 규정된 분야의 삭제와 조세정책목적이 달성된 검인계약서 사용시 감면은 적용시한을 연장하지 아니하고
- 중소기업지원센타, 지방공사등 국가정책 목적달성을 필요한 분야는 세제 지원을 신설하며
- 기타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한 조문과 용어를 정리하는 등 감면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선·보완하기 위한 것임

4. 주요골자

1. 세제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폐지

(가) 고속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감면

-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속철도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·소유하는 고속철도건설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·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던 것을 지방세법 제289조 제3항에 신설 규정됨에 따라 삭제함

(나) 조합주택에 대한 감면

- 주택조합이 건축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동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주택조합명의로 취득·등기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, 동 조합주택을 조합원이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일정면적 규모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의 전액면제 또는 50% 경감하던 것을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에 신설 규정됨에 따라 삭제함

(다) 견인계약서사용 등에 대한 감면

- 개인간의 거래시 작성된 견인계약서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전업농육성대상자가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10% 경감하던 것을
 - 견인계약사용시 경감규정은 당초 감면목적이 달성되었고
 - 전업농육성대상자가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취득시 경감하는 경우는 지방세법 제261조에 50% 경감규정이 있어 감면의 실효성 상실로 삭제함

2. 세제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신설

(가)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

- 지방공사(공단포함)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·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·등록세(법인등기시포함)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,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(단체포함)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면제하지 아니함(안 제23조)

(나) 관광단지투자촉진을 위한 감면

-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안에서 관광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(안 제24조)

(다)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

-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·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·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, 동 지원센타가 그 고유업무 수행을 위하여 받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하며, 법인등기시에는 등록세를 면제함(안 제25조)

(라)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

-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·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·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, 법인등기시에는 등록세를 면제함
(안 제26조)

(마)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대한 감면

-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등 한국 산업안전공단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(안 제27조)

(바)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감면

-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연금기금증식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(안 제28조)

3. 미비한 조문 개선·보완

(가)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규정 보완

- 상이등급 1급 내지 5급인 국가유공자가 배기량 2,000㎤이하 승용 자동차 1대를 구입하여 본인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감면혜택을 주던 것을
⇒ 상이등급 6급까지 확대하고, 또한 본인명의 뿐만아니라 배우자 또는 세대별주민등록표상 직계존·비속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면제토록 하며(안 제2조 제3항)
- 국가유공자가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감면을 받은 후에 기존 승용자동차를 대·폐차하는 경우 새로운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1가구 2차량에 해당되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해
⇒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등록 등을 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1가구 2차량에서 제외하여 면제혜택을 부여 함(안 제2조 제4항)

(나)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규정 보완

- 국가유공단체가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에 있어, 국가유공자단체의 범위를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 해당하는 비영리 사업자로 규정하였던 것을
⇒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사업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함(안 제3조)

(다) 장애인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규정 보완

-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장애인(시각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)이 본인 명의(부모 또는 배우자명의 등록 포함)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,000㎤이하의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
⇒ 본인(부모 또는 배우자 포함)명의 외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·비속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면제토록 하며(안 제4조 제1항)
- 장애인이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감면을 받은 후에 기존 승용자동차를 대·폐차하는 경우 새로운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1가구 2차차량에 해당되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해
⇒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등록 등을 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1가구 2차량에서 제외하여 면제혜택을 부여함(안 제4조 제2항)

(라)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보완

- 공공단체·주택건설사업자등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(아파트·연립주택·다세대주택을 말하며,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)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
⇒ 일반인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에 대하여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토록 함(안 제14조 제1항)

(마)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보완

- 공공단체·주택건설사업자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(아파트·연립주택·다세대주택을 말하며,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)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
⇒ 일반인에게 분양하거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에 대하여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토록 함(안 제15조 제2항)

(바) 재래시장 재개발·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규정 보완

- 시장재개발·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에서 시장 재개발·재건축 당시의 기존시장에서 시장재개발·재건축사업시행계획인가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5년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이 시장재개발·재건축사업시행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여 주던 것을
⇒ 시장재개발·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당해 시장안에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시장재개발·재건축

사업시행자로부터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함(안 제18조 제3항)

(사)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 보완

(증전 : 농의소득원 개발을 위한 감면)

- 농공단지 입주자,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및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 등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(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)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
⇒ 농공단지 입주자에 대한 면제규정이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규정됨에 따라 감면조례에서 삭제하고, 이에 따른 조제목을 정리 함(안 제19조 제1항)

(아)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규정 보완

-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와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건축물 면적(연면적)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
⇒ 부속토지의 범위를 건축물 바닥면적 7배이내로 하여 면제토록 함
(안 제20조 1항)

4. 기타 용어 정리등

관련 개별법령 및 지방세법에서 용어를 개정함에 따라 감면조례상의 용어 등 정리

-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
⇒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(안 제2조제2항)

- 교통부 ⇒ 건설교통부(안 제9조제3호)
- 건설기계 ⇒ 기계장비(안 제10조)
- 사용검사일 ⇒ 사용승인서교부일(안 제12조제2항)
- 주택개량재개발사업 ⇒ 주택재개발사업(안 제16조)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이는 도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감면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

그 주요 내용으로는

- 사회복지지원과 사회교육시설, 대중교통, 서민주택건설, 농어촌지원 및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규정은 적용기간이 1997년말까지로 되어 있어 감면시한을 2000년말까지 3년간 연장하였고
-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감면, 조합주택에 대한 감면, 전업농 육성대상자가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취득하는 농지의 경감규정과 당초 감면목적이 달성된 견인계약서 사용등에 대한 감면 규정은 삭제하였으며
- 또한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에 있어서는 지방공사, 관광단지투자 촉진,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, 신용보증조합, 한국산업안전공단, 국민

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감면 규정은 정책 목적달성을 위하여 세제지원을 신설하였고

-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, 국가유공자단체,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, 공동주택, 임대주택, 재래시장재개발·재건축사업,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,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으며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현실에 맞지않은 불합리한 용어는 자구를 정리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
부 임

-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(안)